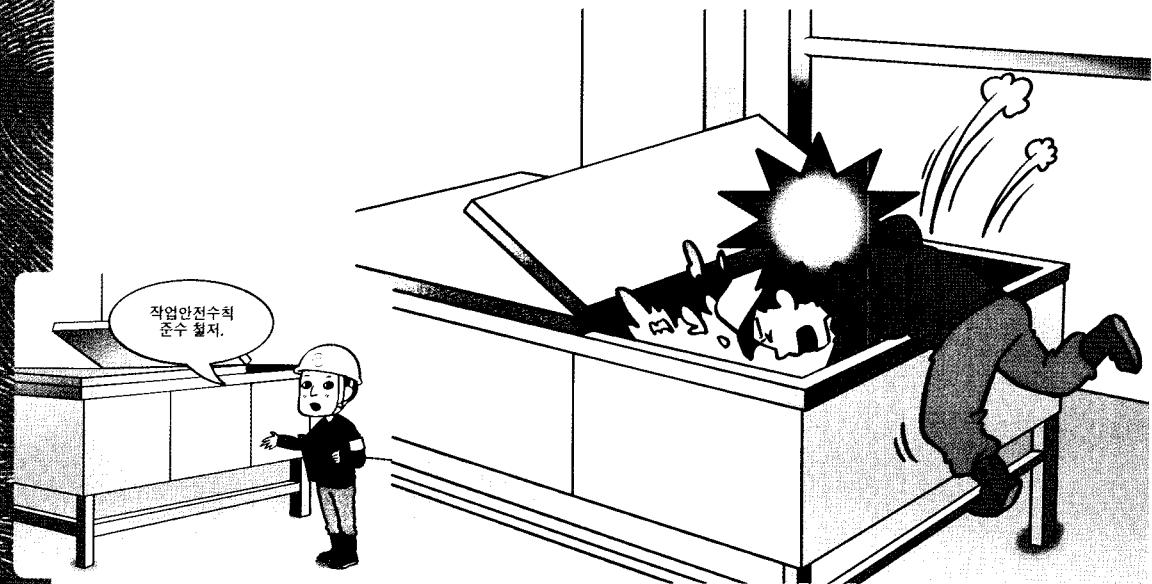


침전조에 빠져 질식

* 업종 : 섬유제품제조업 | 생산품 : 섬유제품 | 기인물 : 침전조 | 재해유형 : 질식 | 피해정도 인적 사망 1명



1. 재해발생개요

피재자가 TiO_2 액(이산화티타늄) 배합작업 시 발생한 부유물질의 제거작업을 하던 중 침전조(VESSEL)에 빠져 의식을 잃고 질식하여 사망한 재해

2. 재해발생과정

피재자가 작업장 내에서 TiO_2 액 배합작업 시 발생한 부유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작업발판을 이용하지 않고 침전조의 앵글을 밟고 올라서서 작업 중 배합물과 안면이 접촉되어 피재자가 순간적으로 머리를 들다가 침전조와 침전조 덮개 연결 부분에 머리 뒷 부분이 부딪히면서 정신을 잃고 침전조 내로 빠져 질식하여 사망

3. 재해발생원인 및 예방대책

가. 재해 발생원인

(1) 부유물질 제거 작업 시 얼굴과 배합물 접촉

(2) 불안전한 행동

(3) 작업종류별 위험성에 대한 의식부족

나. 예방대책

(1) 침전조 내 작업 시 작업발판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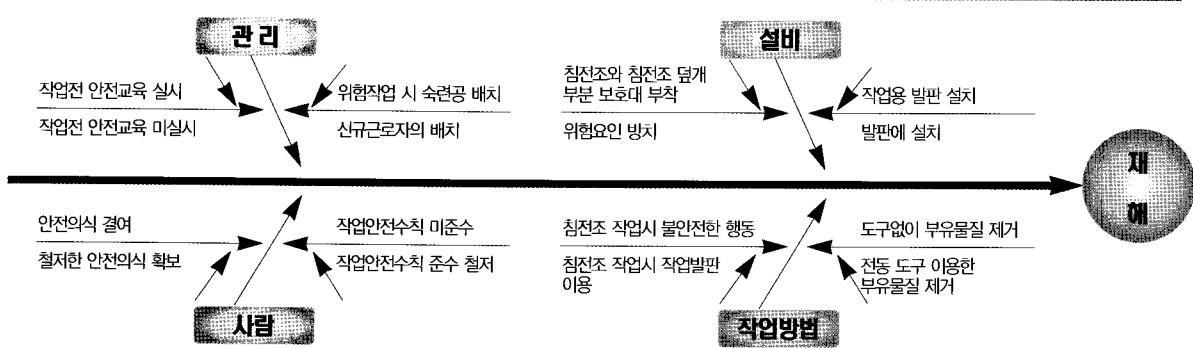
(2) 불안전한 행동 금지

(3) 작업전 안전교육 철저

4. 법위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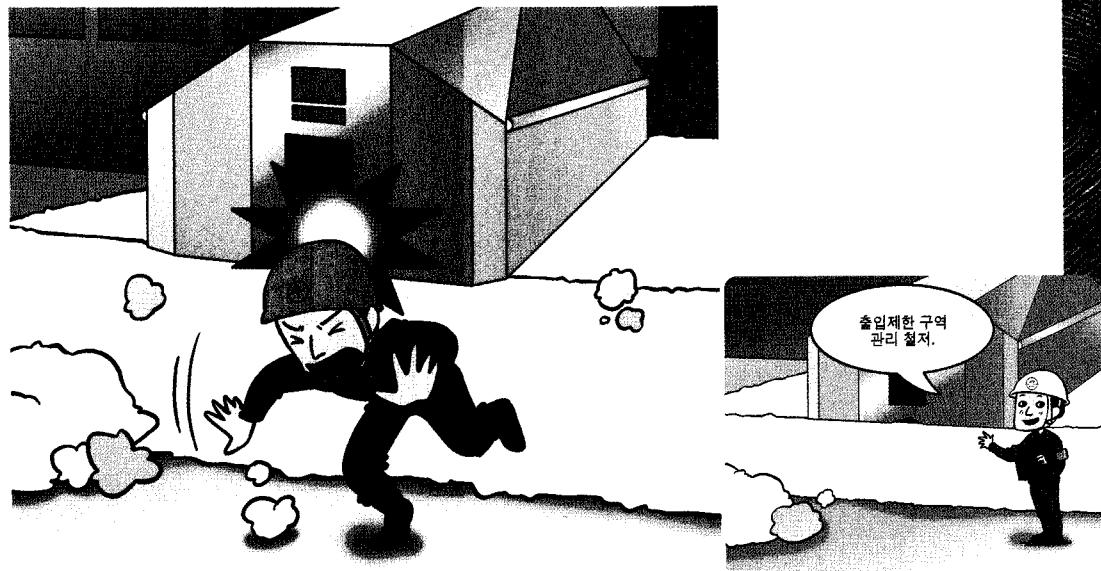
가.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사망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나. 법 제31조 제1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동믹스 흡입구 스크류 협착

* 업종 : 섬유제품제조업 | 생산품 : 부직포 | 기인물 : 자동믹싱기 스크류 | 재해유형 : 협착 | 피해정도 인적 사망 1명



1. 재해발생개요

피해자가 원자재(솜) 자동 흡입장치(오토믹스) 주변에 흩어진 원자재(솜)를 낫은 자세로 청소하던 중 회전 중인 스크류에 머리가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

(2) 안전보호구 미착용

(3) 광전자식 안전장치 임의 해제 후 작업

나. 예방대책

(1) 위험구역 출입제한 조치 철저

(2) 보호구 착용 후 작업

(3) 안전장치의 철저한 점검

4. 법위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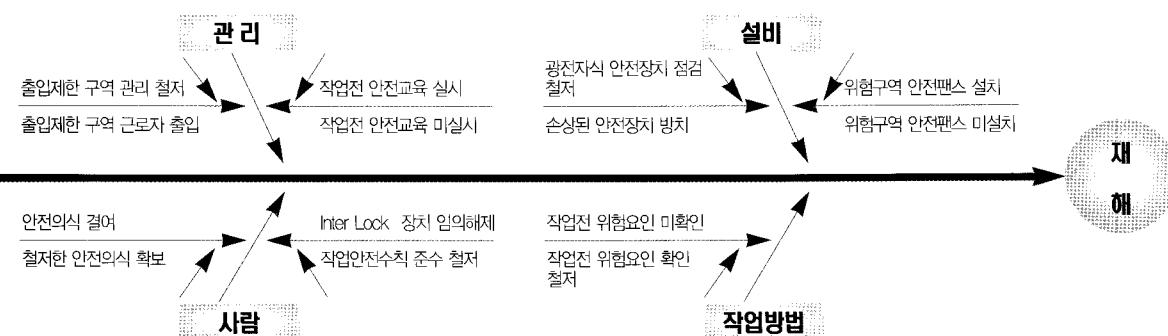
가.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사망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나. 법 제31조 제1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3. 재해발생원인 및 예방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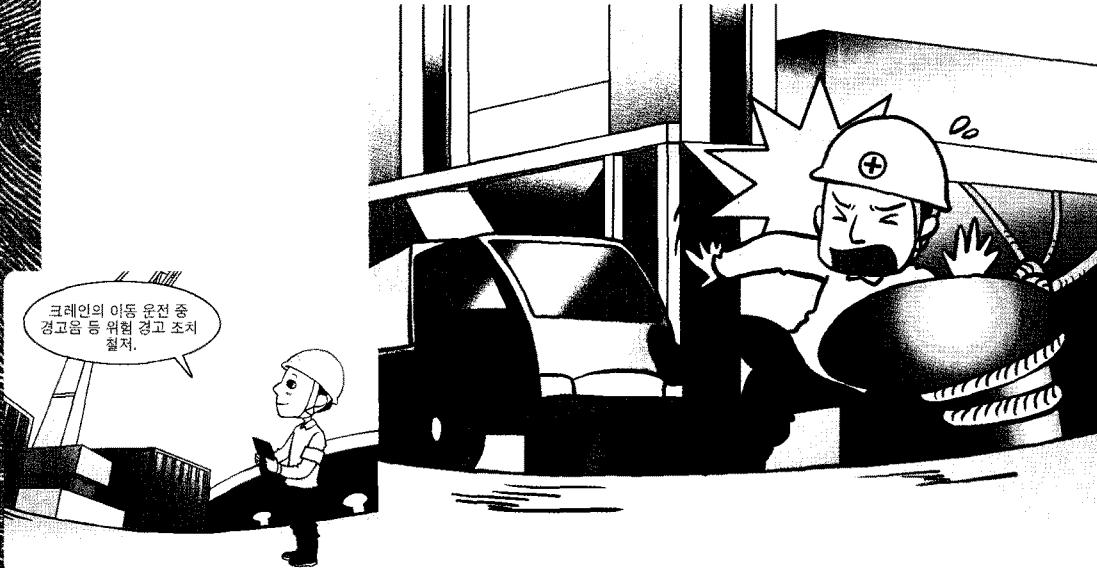
가. 재해 발생원인

(1) 출입제한 구역에서 작업



항만 캔츄리 크레인에 포터차량 충돌, 차량에 협착

* 업종 : 항만하역업 | 생산품 : 항만용역 | 기인물 : 캔츄리 크레인 | 재해유형 : 협착 | 피해정도 인적 사망 1명



1. 재해발생개요

줄잡이 작업을 위해 2개조로 나누어 1조는 선두에서 1조는 선미에서(사고조) 접안 줄걸이 작업을 하자 대기하던 중 캔츄리 크레인이 운전, 트럭과 충돌하면서 차량 앞에서 작업 중이던 피재를 타격하여 피재자가 BIT에 협착하여 사망한 재해

2. 재해발생과정

선박 접안하면서 줄걸이 작업을 하려던 피재자는 선미쪽 스프링 라인 주 2줄을 트럭으로 당겨 BIT에 걸고, 2차 로프를 당기기 위해 트럭을 BIT 가까이에 정차, 부두에 설치된 캔츄리 크레인이 운전, 이동되며 크레인 하부가 트럭의 적재함과 충돌하여 트럭 앞에서 작업 하던 피재자를 덮쳐 피재자가 BIT에 협착하여 사망

3. 재해발생원인 및 예방대책

가. 재해 발생원인

(1) 차량을 캔츄리 크레인 패도에 정차

(2) 접안 중 크레인 운전

(3) 작업지휘자 미배치 후 작업

나. 예방대책

(1) 차량 등 기계 기구는 타 작업에 간섭되지 않도록 장소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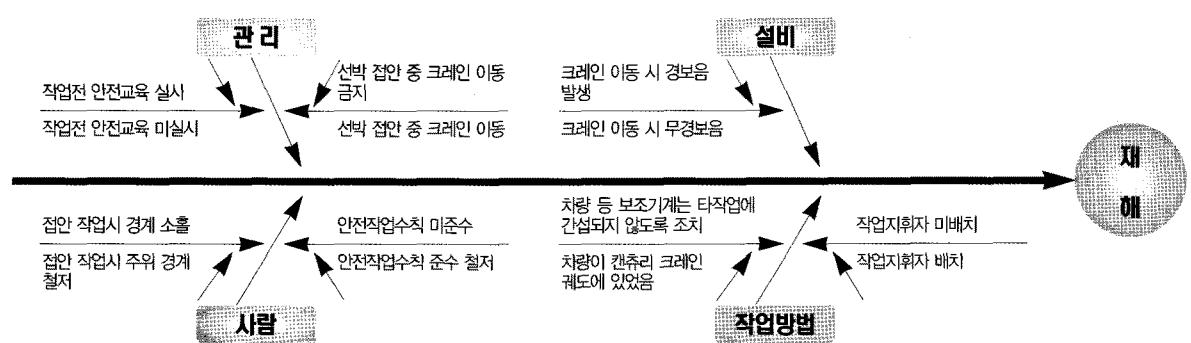
(2) 접안 작업 시 주위 경계 및 안전 확보

(3) 작업지휘자 배치 및 위험구역 구획 표시

4. 법위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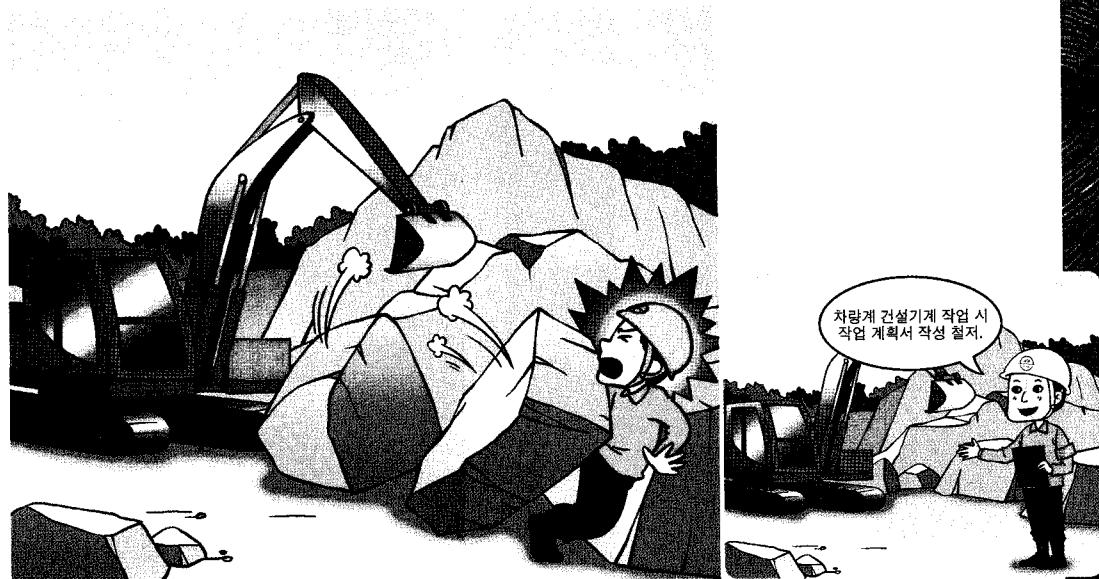
가.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사망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나. 법 제31조 제1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백호우로 원석을 운반하던 중 원석사이에 협착

* 업종 : 건설업 | 생산품 : - | 기인물 : 백호우 | 재해유형 : 협착 | 피해정도 인적 사망 1명



1. 재해발생개요

소활작업을 위해 피재자가 원석 주변에 내리던 과정에서 운반하던 원석이 떨어져 기 천공된 원석과 충돌, 원석이 절괴되면서 피재자가 원석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

2. 재해발생과정

백호우 장비기사가 소할작업을 위해 원석을 피재자 후면의 원석 주변에 내리던 과정에서 운반한 원석이 기 천공된 원석과 충돌하였고, 이로 인해 기 천공된 원석이 절괴 되면서 피재자가 천공된 원석과 원석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

3. 재해발생원인 및 예방대책

가. 재해 발생원인

- (1) 작업계획서 미작성
 - (2) 충분한 작업공간 미확보

(3) 작업전 안전교육 미실시

나. 예방대책

- (1)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시 작업계획서 작성
 - (2) 충분한 작업공간 확보 후 작업
 - (3) 작업전 작업 내용에 대한 근로자 교육 실시

4. 법위반사항

- 가.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사망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나. 법 제31조 제1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